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2. 6. 17(금)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
담당과장	송현주 과장(044-203-5920) 장재량 과장(044-203-5930) 이창훈 과장(044-203-5630) 양지연 과장(044-201-2051) 박용한 과장(044-200-5380) 서민정 과장(02-2100-7652)	담 당 자	이우진 사무관(044-203-5921) 진달래 사무관(044-203-5934) 임수지 사무관(044-203-5635) 이선영 사무관(044-201-2054) 오성택 사무관(044-200-5381) 유형규 사무관(02-2100-7655)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폐막

- 팬데믹 대응, 식량위기 극복, 수산보조금 등 성과 도출로 다자무역체제 재건 모색

□ 스위스 제네바에서 6.12(일)-17(금)(현지시간) 6일간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됨 (참고1)

*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매 2년 개최 관행)

** ①팬데믹 대응 관련 각료선언 ②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③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 ④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 ⑤수산보조금 협상(각료결정) ⑥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각료결정) ⑦위생검역 협정(SPS) 관련 각료선언

○ MC-12에서 회원국들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당초 보다 이틀 늦게**(6.17(금)) 폐막함

□ **MC-12 각료선언**은 WTO 全회원국의 의견합치(컨센서스) 하에 채택되는 **최종 결과문서**로서,

○ 동 각료선언은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여성·환경·소상공인**(MSMEs) 등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특히 **WTO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대응**하여 WTO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 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규범 협상(입법) / 이행·모니터링(행정) / 분쟁해결(사법)

□ 동 **MC-12 각료선언**의 **의제별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팬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및 백신 지재권 관련

○ **(주요 내용)**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및 향후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① **(팬데믹 대응)**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 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한 **팬데믹에 대응**

② **(백신 지재권) 개도국***들이 백신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

*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므로 동 결정 원용이 불가하며, 개도국 중에서도 수출 역량이 큰 국가(예: 중국)도 사실상 원용이 불가하도록 합의

**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실시를 허용하는 제도

○ **(향후 대응)**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물품의 **생산·교역 원활화**,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팬데믹 극복 노력에 기여할 예정

2 식량안보 및 WFP(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 관련

○ **(주요 내용)**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농식품 공급망 교란, 식량·비료 등 투입재 가격 급등과 같은 식량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노력을 반영

① **(식량안보 각료선언*)**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함

* Emergency Response to Food Insecurity

② **(WFP 각료결정*)** 빈곤과 기아 퇴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가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WFP가 인도적 원조를 위해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 **(향후 대응)** 우리나라도 전세계 식량안보를 위하여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고, 식량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

3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참고3)

○ **(주요 내용)** 21년 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MC-12에서 타결**됨

- 수산보조급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임

- 한편,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동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됨

○ **(향후 대응)** WTO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에 따라 **면세유, 원양어업 조건부 보조금**을 비롯한 우리 수산보조금에는 **직접적 영향이 미미함**

- 다만,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을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협의**하기로 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대응 필요**

4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 연장 결정

○ **(주요 내용)**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 연장 기한: ❶'23.12.31일 이전 MC-13 개최시 **MC-13까지**
❷'23.12.31일 이후 MC-13 개최시 **'24.3.31까지** 연장 (통상장관 또는 일반이사회가 별도로 연장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 '98년 각료선언 당시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지속을 합의한 이후, 매회 WTO 각료회의 계기 '차기 각료회의까지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지속'키로 합의

○ **(영향)** 금번 합의를 통해 한류 컨텐츠 수출 등 디지털 제품 **교역 환경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

5 SPS* 각료선언 채택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 **(주요 내용)** WTO SPS 협정상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SPS 이행 개선**을 위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신규의무 부과 없음)

○ **(향후 대응)** 기존 협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역량 강화** 및 **국제적 협력 지속**

□ 평가 및 의의

○ **(성과 도출)**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全회원국(164개)의 의견합치**(컨센서스)를 토대로 **각료선언에 합의**함

- **각료선언** 채택은 **세계경제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WTO 다자 플랫폼을 통한 "정책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각료선언에 WTO 개혁, 환경, 무역과 여성, 소상공인(MSMEs) 등 관련 내용도 포함

- 또한 **제10차 각료회의('15.12월) 이후 7년** 만에 식량위기, 수산보조금, 팬데믹 대응 등 **다자 차원의 성과물이 도출**된 바,

* 11차 각료회의('17)에서 각료선언 및 다자 결과물 도출에 실패하면서 **WTO 위기론 심화**

- 이는 MC-12에서 성과를 도출해서 WTO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 무역체제 복원** 논의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결집한 결과

○ **(WTO 개혁)** 또한 **MC-12 각료선언**에 **WTO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포함**됨

- 그간 **WTO 내외에서 개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온 가운데 MC-12 계기에 **개혁 논의** 개시에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 향후 **WTO 3대 기능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다자무역질서 복원**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러우 사태)** 당초 **러우 사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지 우려가 있었으나 **현안 논의와 정치적 규탄을 분리**하여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EU(27개국), 영국 등 주요국**과 별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함 (참고2)

□ 한편,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본부장**은 美·中·印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갖고 IPEF·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함

○ 또한,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향후 **분쟁해결체제 복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 아울러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및 개도국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유영석 사무관(☎ 044-203-59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결과문서 (MC12 OUTCOME DOCUMENT) 주요 내용

< 전반 >

①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마라케쉬 협정에 규정된 원칙과 목표 재확인

○ 글로벌 경제회복, 성장, 번영, 빈곤 완화, 복지, 지속가능 성장 등을 위한 국제무역과 WTO와의 연관성 및 역할 강조 등

② **(WTO 개혁)** WTO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며, WTO 개혁 노력 약속

○ WTO 개혁이 모든 기능의 개선을 포함하며, 개혁 작업은 회원국이 주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적이고 포용적이여야 함

○ (분쟁해결 시스템) 분쟁해결 시스템의 중요성 인식, 24년까지 정상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위한 논의 진행

③ **(개도국 특혜 등)**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도국 특혜(S&DT) 조항 재확인 등

○ WTO와 그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LDC를 포함하며, S&DT는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작동 가능하여야 함

○ LDC 졸업 및 졸업 예정국가들의 진전에 주목하고, WTO의 특정 조치의 LDC 졸업 국가 전환 촉진 가능성 인지

④ **(WTO 가입)** 새로운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최빈 개도국의 지속적인 가입 협상 체결 촉진 약속

⑤ **(각료회의 결정 이행)** 제9차, 제10차 각료회의 결정 등 재확인

⑥ **(서비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서비스 무역의 영향을 인지하고, 서비스 무역의 회복 필요성 강조 등

⑦ **(여성/MSME)** 여성의 경제적 권한 위임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여 인정

⑧ **(기후변화)** 기후변화, 재난, 생물 다양성의 상실, 오염 등을 포함한 글로벌 환경에 대한 도전을 인식하고, '무역과 환경' 위원회 역할 강조

< 후반 > : MC-12에서 채택된 각료선언과 각료 결정

○ ❶식량위기 관련 각료선언, ❷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 ❸SPS 관련 각료선언, ❹팬데믹 대응 관련 각료선언, ❺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 결정, ❻WTO 수산보조금 협상(각료결정), ❼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각료결정)

참고2 Joint statement on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the Ministers of the undersigned WTO members,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Ukraine. At the 12th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WTO we are engaged in finding multilateral solutions to pressing global issues and negotiating to deliver for communities across the globe. This does not represent a normalizing of trading relations with Russia.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Russian Federation'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ssisted by Belarus. Belarus' accession to the WTO was halted in 2020 and we will not consider it further. We stand in unwavering support of Ukraine and will work together to find ways to use trade to support Ukraine to rebuild its economy and society. The Russian Federation's actions, which have continued unrelenting for more than 15 weeks, are an unprovoked, premeditated attack against a sovereign democratic state. They also constitute a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harter, and undermin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se actions show the Russian Federation does not respect international institutions, disciplines, and norms.

Russia's indiscriminate attacks on Ukraine's civilian infrastructure and blockades of Ukraine's seaports have also exacerbated pre-existing problems affecting supply chains in multiple sectors, with 1.7 billion people in over 100 countries now facing severe food, energy and commodity supply issues and price rises.

Together, we insist that the Russian Federation must urgently stop it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immediately withdraw its troops. We are firmly convinced that the Russian Federation must be held accountable and must cease its actions, which undermine global peace,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s, as WTO Members, that we each consider necessary to protect our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nd we will continue to impress upon the Russian Federation the urgent need for it to live up to its responsibilit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ustralia; Canada; Costa Rica; European Union; Iceland; Japan; Republic of Korea; Montenegro; New Zealand; North Macedonia; Norway;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참고3 WTO 제12차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협정 참고자료

□ (**협상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면세유·원양 보조금·개도국 특혜 등 주요 조항을 삭제**하고 합의

○ 결과적으로 WTO 수산보조금 협정은 ①IUU 어업 및 ②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만 규제하는 것으로 결정

○ 유류 보조금(면세유), 원양어업 보조금을 비롯한 **우리 수산보조금 제도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수산보조금 협정 주요 내용**

① (**금지보조금***) **IUU·남획 관련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 면세유와 같은 비특정적 유류보조금은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영향이 없음**

-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특정적 유류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자원관리조치의 효과가 입증**되면 유지 가능(제4.3조)

② (**원양어업 보조금**) 원양어업에만 지급되는 **보조금 금지 조항 삭제**

③ (**타국어선에 대한 보조금**) 특별한 주의 하에 타국 어선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조항이 추가됨**

□ **관찰 및 평가**

○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삭제된 쟁점(**면세유·원양보조금·개도국 특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수산보조금 **협정 실효**(**일몰조항**)

* 전체 회원국(164개국) 3분의 2 이상(110개국)의 비준 필요

- 이에 따라, 이번에 삭제된 쟁점 관련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